

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6]

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기준(제33조제1항 관련)

| 대상            |     | 검사 항목     | 적합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음향측심기         | 다중빔 | 수중 측정 거리  | 평균: 기준거리의 ±10cm 이내<br>표준편차: 10cm 이내 | 10, 20, 30, 40m 거리마다 측정하며, 300개(ping) 이상의 데이터를 취득해야 한다.   |
|               |     | 수중 물체 탐지율 | 1m³ 정육면체 물체에 대한 탐지율이 40% 이상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단빔  | 수중 측정 거리  | 평균: 기준거리의 ±10cm 이내<br>표준편차: 10cm 이내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유속계<br>(도플러식) |     | 평균 유속     | 기준의 ±5%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유속계 거치장치의 예인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  | 평균 유향차    | 기준의 ±10°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| 유속계 거치장치의 예인 방향변화를 기준으로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조위계<br>(압력식)  |     | 안정도       | 표준편차: 최대 측정 가능 범위의 0.08% 이내         | 5~7m 사이의 고정수심에서 60분 이상 압력을 측정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  | 정확도       | 표준편차: 최대 측정 가능 범위의 0.08% 이내         | 1, 3, 5, 7, 9m의 수심에서 20분 이상 압력을 측정한다.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  | 배율        | 0.99~1.01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확도 검사 시 기준압력계와 대상 조위계의 측정값 변화량의 기울기를 측정한다.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  | 상관계수      | 0.99~1.00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확도 검사 시 기준압력계와 대상 조위계의 측정값 상관 관계 분석에 의한 피어슨 상관계수 값으로 한다. |